바다의 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계획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유해·교란해양생물 추가 지정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Ⅰ 추진 배경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해양생태계법 개정('17.6.28 시행)에 따라 법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및 미비한 사항 개선 등

□ **유해교란해양생물 지정·관리**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유해교란 해양생물 추가 지정을 반영한 시행규칙 별표 개정

Ⅱ 그간 추진경과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협력금 제도 개선방안 방침 결정('17.5.29)

□ (**유해생물**)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등에 따라 생태계 또는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신규 위해우려종 발굴** 및 **평가** 실시

○ 신규 후보종의 분포, 특성 등 사전 조사 및 연구 : '15.9~'17.4

○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 : '17. 4. 24/ 서면의견수렴(4.17~4.27)

≪평가위원회 및 의견수렴 결과≫

구분	지정 검토종(7종)	비 고	금회 지정대상
유해생물	보티반타이끼벌레	국내 피해 사례는 제주도에 국한된 점, 자연소멸 가능성, 생태적 연구 부족 등을 고려, 지속 모니터링 후 재검토 ☞ 지정 보류	-
	피에스테리아	국내 분포량이 매우 낮고 피해 사례가 없어 지속 모니터링 후 재검토 ☞ 지정 보류	-
	커튼원양해파리, 작은상자해파리	최근 유입량 증가. 쏘임사고, 어업피해 등 위해성은 '16년 평가시 입증. '17.2월 국명·학명이 학회 등재되어 지정 가능 ☞ 즉시 지정 필요	2종
교란생물	유령멍게	국내 연안에 광범위 분포, 선박·양식시설물에 부착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입증 ☞ 즉시 지정 필요	1종
	잎파래, 굉생이 모자반	상업종. '외래 유입 부유성 해조류' 등으로 한정하여 지정하는 방안은 토착종과 구별이 어려워 양식업 악영향 우려 ☞지정 불가(쓰레기 수거 등으로 해결)	-

☞ 위해성 평가 결과, **3종을 유해교란해양생물로 추가 지정 필요**

Ⅲ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내용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 관련 반영사항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횟수 규정(안 제38조)

○ (현행)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협력금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를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

○ (개선)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2억원 이하는 2회 이하, 2억원 초과는 3회 이하**로 하되,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사업자인 경우 분할횟수는 **2회 이하**로 규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현 행	개정안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생 략)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부과금액별 분할 납부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1. 2억원 이하 : 2회 이하 2. 2억원 초과 : 3회 이하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권자 변경 및 반환사업 위탁시행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41조)

○ (현행) 해양생태계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 중인 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 협력금 납부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에서 반환 가능

- 별도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승인권자**로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과 상위법령간 불일치 발생**

*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권자

- 협력금은 전액 국고(수산발전기금)로 귀속되고 있어 반환사업 재원이 없는 시·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부적절

- 또한, 해양생태계법의 개정('16.12.27.)으로 협력금 반환사업의 위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 규정** 필요

* (개정 목적) 반환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활성화
(반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현행: 협력금 납부자 ⇒
'17.6.28. 이후: 협력금 납부자 또는 납부자로부터 반환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개선) 협력금 반환사업의 사업재원인 수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반환사업을 승인**토록 개정하고,

- 반환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위탁 동의서** 및 **위탁 시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규정

현 행	개정안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 1. ~ 6. (현행과 같음) ②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

	받은 자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위탁 동의서 2. 위탁받는 자의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금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 서식]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위탁동의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납부 금액 및 일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위탁시행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위탁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받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동의기관	처리기관
	협력금 납부자	해양수산부
동의서 작성	접수 → 검토 → 위탁동의	동의서 제출

210㎜×297㎜[백상지 80g/㎡]

3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 누락 대상사업의 추가 등**(안 제42조)

○ (현행) 법률 개정('11.5.19.)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부과대상사업으로 추가** 되었으나,

-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규칙 미개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통보 기산일이 누락**

- 또한 부과통보 기산일을 **최초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협력금 부과대상면적이 추가되는 경우** 협력금 추가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

○ (개선)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대한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추가**하고

*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 처분을 한 날'

-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최초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로 **변경**

현 행	개정안
제42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의 탐광 및 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한 시점	제42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①----------.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2. ---------- 날

<신 설>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같은 법 제91조 및 제94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안의 매립사업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의 처분을 한 시점	4. ---------- 면허 ---------- 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의 처분을 한 시점	5. ---------- 점용·사용허가---------- 허가 ---------- 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유해교란해양생물 지정 · 관리 관련 반영사항

1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현행)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2호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

○ (개선)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위한 시행규칙 **근거규정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의2(해양생태계교란생물)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말한다.

2 유해·교란해양생물 추가 지정(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 위해성이 입증된 **해파리 2종**(커튼원양해파리, 작은상자해파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거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

○ 국내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유령멍게**를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별표 4]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table>
<tr><th>분류군</th><th>국명(보통명)</th><th>학명</th></tr>
<tr><td rowspan="5">식물플랑크톤</td><td>디노피시스</td><td>Dinophysis spp.</td></tr>
<tr><td>슈도니치아</td><td>Pseudo-nitzschia spp.</td></tr>
<tr><td>알렉산드리움</td><td>Alexandrium spp.</td></tr>
<tr><td>차토넬라</td><td>Chattonella spp.</td></tr>
<tr><td>코클로디니움</td><td>Cochlodinium polykrikoides</td></tr>
<tr><td rowspan="3">자포동물</td><td>노무라입깃해파리</td><td>Nemopilema nomurai</td></tr>
<tr><td>보름달물해파리</td><td>Aurelia aurita</td></tr>
<tr><td>작은부레관해파리</td><td>Physalia physalis</td></tr>
<tr><td rowspan="2">극피동물</td><td>별불가사리</td><td>Asterina pectinifera</td></tr>
<tr><td>아무르불가사리</td><td>Asterias amurensis</td></tr>
<tr><td rowspan="3">태형동물</td><td>관막이끼벌레</td><td>Membranipora tuberculata</td></tr>
<tr><td>세방가시이끼벌레</td><td>Tricellaria occidentalis</td></tr>
<tr><td>자주빛이끼벌레</td><td>Watersipora subovoidea</td></tr>
<tr><td rowspan="2">식물</td><td>갯줄풀</td><td>Spartina alterniflora</td></tr>
<tr><td>영국갯끈풀</td><td>Spartina anglica</td></tr>
</table></td><td>[별표 4]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table>
<tr><th>분류군</th><th>국명(보통명)</th><th>학명</th></tr>
<tr><td rowspan="5">식물플랑크톤</td><td>디노피시스</td><td>Dinophysis spp.</td></tr>
<tr><td>슈도니치아</td><td>Pseudo-nitzschia spp.</td></tr>
<tr><td>알렉산드리움</td><td>Alexandrium spp.</td></tr>
<tr><td>차토넬라</td><td>Chattonella spp.</td></tr>
<tr><td>코클로디니움</td><td>Cochlodinium polykrikoides</td></tr>
<tr><td rowspan="5">자포동물</td><td>노무라입깃해파리</td><td>Nemopilema nomurai</td></tr>
<tr><td>보름달물해파리</td><td>Aurelia aurita</td></tr>
<tr><td>작은부레관해파리</td><td>Physalia physalis</td></tr>
<tr><td>커튼원양해파리</td><td>Chrysaora pacifica Goette</td></tr>
<tr><td>작은상자해파리</td><td>Carybdea brevipedalia Kishinouye</td></tr>
<tr><td rowspan="2">극피동물</td><td>별불가사리</td><td>Asterina pectinifera</td></tr>
<tr><td>아무르불가사리</td><td>Asterias amurensis</td></tr>
<tr><td rowspan="3">태형동물</td><td>관막이끼벌레</td><td>Membranipora tuberculata</td></tr>
<tr><td>세방가시이끼벌레</td><td>Tricellaria occidentalis</td></tr>
<tr><td>자주빛이끼벌레</td><td>Watersipora subovoidea</td></tr>
<tr><td rowspan="2">식물</td><td>갯줄풀</td><td>Spartina alterniflora</td></tr>
<tr><td>영국갯끈풀</td><td>Spartina anglica</td></tr>
</table></td></tr>
<tr><td><신 설></td><td>[별표 5] 해양생태계교란생물(제5조의 2 관련)
<table>
<tr><th>분류군</th><th>국명(보통명)</th><th>학명</th></tr>
<tr><td>척삭동물</td><td>유령멍게</td><td>Ciona intestinalis Linnaeus</td></tr>
</table></td></tr>
</table>

Ⅳ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17.6~7)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 및 **규제심사**('17.8~9)

□ **법제처 심사** 및 **개정**('17.10)

참고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요

□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징수 ◦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해양생태계보전 및 복원 사업에 사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광업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해양환경관리법」제 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 사업을 하는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부과요율

산출식	관련 법령
◦ 해양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 × 지역계수 - 지역계수 항만구역: 2 항만구역 외의 지역: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 부과·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655	69,978	615	61,861	40	8,117	88
2016	65	4,404	76	5,883	△11	△1,479	133
2015	51	5,861	51	5,373	-	488	92
2014	80	7,064	82	6,125	△2	939	87
2013	61	7,998	41	5,253	20	2,745	66
2012	52	7,125	124	12,548	△72	△5,423	176
2011	79	7,861	50	8,202	29	△341	104
2010	90	12,607	64	6,507	26	6,100	52
2009	63	7,362	79	6,907	△16	455	94
2008	103	8,895	38	4,321	65	4,574	49
2007	11	801	10	742	1	59	93

* 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 부과된 경우 3년 이내 분납가능으로 징수실적이 많음

□ 사용 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5.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6.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시설 - 해양경관보호구역의 경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7.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의 복원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모래톱·해저사퇴(海底砂堆) 또는 하구역(河口域) 등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참고 2 유해·교란해양생물 지정 후보종 특성

커튼원양해파리	주요 특징
	- **(특성)**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고, 우산에는 방사형으로 진한 갈색 줄무늬가 있음. 24개의 갈색촉수가 머리 아래쪽 가장자리를 따라 붙어 있으며, 프릴(frill)모양의 하얀 구완이 머리 안쪽 가운데에서 길게 늘어져있음 - **(피해현황)** 남해와 동해 전반에서 어민들의 쏘임 사고가 발생하며, 최근 동해 연안에서 다이버들의 쏘임 사고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음 - **(서식/분포 현황)** 통영, 마산, 욕지도 등 주로 남해안과 포항, 강릉 등 동해지역에 분포 - **(위해성)** 강독성이어서 붉은 반점과 통증을 유발

작은상자해파리	주요 특징
	- **(특성)** 우리나라에서 분포하는 유일한 Cubozoa(상자해파리강)로서 맹독성임. 성체의 우산 크기만으로는 직경 2~4cm에 불과하나, 촉수를 늘어뜨리면 전체 길이가 1m를 넘기도 함. - **(피해현황)** 제주도, 남해도 일대의 해수욕장에서 쏘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특히, 2013년부터 쏘임 사고가 이 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음. 상주해수욕장 등 남해도의 해수욕장에서 치료, 처치한 인원이 2015년 533 건, 2016년 466 건에 이름. - **(서식/분포 현황)** 제주도, 남해도, 삼천포에서 높은 밀도로 분포하며, 고성, 자란만, 통영, 그리고 가막만에서도 발견된 바 있음 - **(위해성)** 대부분의 상자해파리류는 맹독성임. 심한 통증에 이어, 가려움, 물집, 피부괴사 등이 동반된다. 투명하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해수욕객 피해가 빈번함.

유령멍게	주요 특징
	- **(특성)** 몸은 가늘고, 단순히 긴 원통형이며, 몸길이는 보통 10~15cm 까지 성장. 몸은 후부 끝이 저질에 영구적으로 붙어있고 반대쪽 말단인 앞쪽 끝에 2 개의 구멍(입수공, 출수공)이 있음. 몸은 상피세포의 분비물인 셀룰로오스 같은 물질의 부드러운 젤라틴성 피낭으로 싸여있고, 피낭은 얇고 부드럽고 투명하며 맑고 내부기관이 보임. - **(피해현황)** 유령멍게의 먹이활동을 통해 굴 유생을 직접 잡아먹고 부착에 쓰이는 자유기질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굴이 정착하는 것을 억제. 이매패류의 플랑크톤 유생 뿐 아니라 세균을 먹는 섬모충류 같은 소형 동물플랑크톤의 풍부도에 부정적 영향. 어류 양식장의 우리와 그물에 대량 부착하여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 소모 - **(서식/분포 현황)** 국내 침입은 서해안의 일부를 제외한 전국 모든 해안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8월 시기(여름)에 대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됨. - **(위해성)** 유령멍게는 해저의 밑바닥에 상당히 많은 양의 배설물을 퇴적시킴. 계속적인 유기물 농축은 무산소 저질의 발생을 야기하고 유독가스인 황화수소(H2S)의 축적과 저서생물군집의 파괴 등을 일으킴.

참고 3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증가 등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종을 유해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14739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탁시행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과 상위법령 간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나. 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

- 커튼원양해파리(*Chrysaora pacifica Goette*)
- 작은상자해파리(*Carybdea brevipedalia Kishinouye*)

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 1종을 신규 지정

- 유령멍게(*Ciona intestinalis Linnaeus*)

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횟수 규정(안 제38조)

- 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를 2억원 이하는 2회 이하, 2억원 초과는 3회 이하로 하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사업자인 경우 분할횟수는 2회 이하로 규정

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권자 변경 및 반환사업 위탁시행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41조)

- 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권자를 시·도지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시행규칙과 상위법령간 불일치를 해소

- 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위탁 동의서 및 위탁 시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규정

바.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 누락 대상사업의 추가 등(안 제42조)

- 누락된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대한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추가하고,

-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최초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생태계교란생물)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말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과금액별 분할 납부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위탁 동의서

2. 위탁받는 자의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금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7호의2서식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제42조제1항제2호 중 “시점”을 “날”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같은 법 제91조 및 제94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제42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최초로 면허의”를 “면허”로, “시점”을 “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점·사용허”를 “점용·사용허”로, “최초로 허가의”를 “허가”로, “시점”을 “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분류군	국명(보통명)	학명
가. 식물플랑크톤	디노피시스	*Dinophysis* spp.
	슈도니치아	*Pseudo-nitzschia* spp.
	알렉산드리움	*Alexandrium* spp.
	차토넬라	*Chattonella* spp.
	코클로디니움	*Cochlodinium polykrikoides*
나. 자포동물	노무라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
	보름달물해파리	*Aurelia aurita*
	작은부레관해파리	*Physalia physalis*
	커튼원양해파리	*Chrysaora pacifica Goette*
	작은상자해파리	*Carybdea brevipedalia Kishinouye*
다. 극피동물	별불가사리	*Asterina pectinifera*
	아무르불가사리	*Asterias amurensis*
라. 태형동물	관막이끼벌레	*Membranipora tuberculata*
	세방가시이끼벌레	*Tricellaria occidentalis*
	자주빛이끼벌레	*Watersipora subovoidea*
마. 식물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별표 5]

해양생태계교란생물(제5조의2 관련)

분류군	국명(보통명)	학명
척삭동물	유령멍게	*Ciona intestinalis Linnaeus*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 서식]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위탁동의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납부 금액 및 일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위탁시행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위탁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받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동의기관	처리기관
	협력금 납부자	해양수산부
동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위탁동의	▶ 동의서 제출

210㎜×297㎜[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해양생태계교란생물)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말한다.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생 략) <신 설>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부과금액별 분할 납부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1. 2억원 이하 : 2회 이하 2. 2억원 초과 : 3회 이하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 ---------- ---------- ---------- 해양수산부장관 ----------. 1. ~ 6. (현행과 같음) ②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위탁 동의서 2. 위탁받는 자의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금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③해양수산부장관은 ---------- ---------- ---------- ---------- ----------. ④---------- ---------- ---------- ---------- ---------- ----- 해양수산부장관----------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2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①----------.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의 탐광 및 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한 시점	2. ---------- 날
<신 설>	3. 「해양환경관리법」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같은 법 제91조 및 제94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안의 매립사업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의 처분을 한 시점	4. ---------- 면허 ---------- 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	5. ----------

면의 점·사용허가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의 처분을 한 시점	-- 점용·사용허---------- ------ 허가 ---------- - 날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